

의안 번호	2328	【울산 중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8. 22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8. 22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9. 4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울산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4. 12. 31일자로 만료되고,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코자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중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
- 위탁사무의 내용
 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,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
 - 단체급식이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
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
-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
다. 근거법규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2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신동학)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그리고,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,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음.
-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
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“급식소”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
② 삭제 <2023. 8. 8.>

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

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
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 4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- 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
 2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도
 3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
 4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-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「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」

제2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2.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3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 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